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82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동북권 특화 뉴미디어 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하고,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2021년 5월 「서울창업허브 창동」을 개관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사업화,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위치: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창동 아우르네
- 규모: 지하2~지상4층 / 연면적 8,978.17㎡
- 공간현황: 입주공간, 오픈이노베이션센터, 뉴미디어 스튜디오 등

나. 위탁 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년(2026. 1. 1.~ 2027. 12. 31.)

※ 위탁기간이 '25.10.31'로 종료되나, 사업추진 연속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탁법인(서울경제진흥원)과 2개월('25.11.1~'25.12.31) 위탁기간 연장 예정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6년 소요예산(안) : 3,225백만원(민간위탁금 등)

다. 위탁사무

-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선발·관리·보육·지원 등 사업추진 전반
-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VC·AC 등), 대중견기업 연계 및 사업지원
- 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 운영 및 뉴미디어 마케팅 활용한 창업 기업 보육지원
- 창동 아우르네 전체 복합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총괄
- 기타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을 위해 '시'와 협의한 사항

라.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뉴미디어 마케팅을 통한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원스톱으로 지원 등 동북권 창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

- 뉴미디어 분야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는 투자·창업기획 관련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 국내외 플랫폼 및 다양한 네트워크 협업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등 외부 투자 환경 변화에 취약한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기 대응이 필요한 업무임
- 따라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위탁 사무로,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경위

- '15. 2.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발표
- '16. 5.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계획 수립
- '17. 9.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통합 관리·운영 추진계획 수립
- '19. 9. 동북권 창업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제289회 정례회)
- '20. 4. '(가칭)창업고도화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 체결
- '21. 5. 서울창업허브 창동 개관
- '22. 6. 서울창업허브 창동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제307회 정례회)
- '22. 10.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 위·수탁협약 체결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5. 5. 9.) 심의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제11조(협약체결 등)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6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박선아(☎ 2133-4884)

김남지(☎ 2133-4880)